

Q

저희 회사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결정된(부대입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사업자를 건설회사로 보고 단종회사인 당사를 수급사업자로 계약을 하여 하도급 업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결정된 공사를 원사업자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비를 관리한다는 개념 하에 당사에서 요청한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시를 하면서 공사 기성에 안전관리비 지급을 삭감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관리 할 수 있다면 당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상기 내용과 같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사용하게 하거나 하도급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직접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저희 현장은 15M도로 중 5M정도를 점유해서 현장 경계 및 출입문을 만들다 보니,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도로쪽으로 나오다 통행하는 차량에 근로자들의 사고가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문과 연결되는 도로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100% 현장출입자의 외부출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라고 생각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귀 질의의 현장외부 출입자 등 통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면분진이 건강진단 측정대상항목이 아니나 측정을 하여서 초과가 되었을 경우
검진주기가 조정이 되는지 그리고 법적인 항목 이외의 검사항목을 의뢰를 받
았을 경우 의뢰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헵탄, 시클
로hex산, 아크릴산 등) 근로자건강진단 노동부고시(99-29호)에 의거하여 일
반·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분리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면분진은 법정 측정대상이 아니고, 측정방법이나 기준 등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면분
진 측정결과를 가지고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주기 단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사업주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면분진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
단됩니다.

사업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닌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독성학적으로 유사한 유해인자에 준한 검사 항목 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선정할
검사 항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실시 및 결과
를 별도로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사업주가 임의로 분리하여 각각 실시하여도 법적인 하지는 없으나,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사업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공사 중(공정 15이상) 민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6개월 정도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경우 공사 일시중지 기간 중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선임할 의무가 없다면 공사 재개시의 안전관리자 선임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되
어있으며,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노동부장
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가 적극적으
로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라는 의미로써 도입된 제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된 관계로 현장에는
작업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며, 공사가 재개될 시에 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여 14일 이내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